[별지 제16호서식] <개정 2010.4.7>

자동차양도증명서(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)

지역 및 일련번호

「자동차등록규칙」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양도인 (서명 또는 인)

양수인 (서명 또는 인)

중고차동차매매계약서

자동차등록번호		주 행 거 리	km
차 종		차 명	
차 대 번 호		계 약 금	년 월 일 일금 원정
중 도 금	년 월 일 일금 원정	잔 금	년 월 일 일금 원정
매 매 금 액	일금 원정	등 록 비 용	일금 원정
자동차 인도일		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	

제1조(당사자표시) 양도인을 “갑”이라 하고, 양수인을 “을”이라 한다.

제2조(동시이행 등) ① “갑”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“을”에게 인도하기로 한다. 다만, “갑”과 “을”의 합의에 따라 매매금액의 2/3 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.

②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(이하 “매매업자”라 한다)에게 내주어야 한다. 다만, 매매업자가 매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3조(공과금 부담)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,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“갑”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분은 “을”이 부담한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4조(사고책임) “을”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.

제5조(법률상의 하자책임) ①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“갑”이 그 책임을 진다.

② 매매업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·상태의 점검 내용을 “을”에게 알려야 한다.

제6조(해약금) “갑”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“갑”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“을”에게 배상해야 하며, “을”이 위약한 경우에는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.

제7조(매매업자의 책임) 제5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, 시·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. 다만,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8조(등록 지체 책임) “갑”과 “을”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발급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.

제9조(할부승계 특약) “갑”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“을”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“을”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.

제10조(계약서)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 작성하여 “갑”이 1통, “을”이 1통,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씩을 각각 지닌다.

(특약사항)

수입인지 「인지세법」에 따름(뒷면에 붙임)

계약연월일			년 월 일	
계약당사자	양도인 (갑)	성명(명칭) 주민등록(사업자)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	(서명 또는 날인) (전화:)	
	양수인 (을)	성명(명칭) 주민등록(사업자)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	(전화:)	
	자동차 매매업자	등록번호 및 상호	제 호	제 호
		대표자	직인	직인
		취급자	(인)	(인)

비 고

1. 이 양도증명서는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. 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.
3.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제시 및 매도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
33331-17311일 210mm×297mm
96.10.4 승인 (보존용지(2종) 70g/㎡)